

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

■ 변경대상 :

- 하나UBS아름다운실버배당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
- 하나UBS배당60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- 하나UBS 태극 배당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33조(이익 분배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단서조항 신설)</u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부 칙	(신 설)	이 신탁계약서의 효력발생일은 2010년 2월 1일로 한다.